●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-21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, 제20조 및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-80호, 2022. 12. 07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3년 06월 01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일부개정

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중 【별표】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【별표】 중 고유번호 "97-1-41" 란, "97-1-68" 란, "97-1-73" 란, "97-1-134" 란, "97-1-213" 란, "98-1-480" 란 및 "2014-1-692" 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 개정하고, 고유번호 "2022-1-1109" 란 다음에 "2023-1-1110" 란부터 "2023-1-1115" 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고유번호	화학물질의 명칭
97-1-41	디엠에이비[DMAB; <u>Dimethylamine borane</u> ; 74-94-2] 및 이를
	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97-1-68	메르캅토아세트산[Mercaptoacetic acid; 68-11-1] 및 이를 <u>1%</u>
	이상 함유한 혼합물
97-1-73	메타아크릴로니트릴[Methacrylonitrile;126-98-7] 및 이를 <u>1%</u>
	이상 함유한 혼합물
97-1-134	셀레늄[Selenium; 7782-49-2] 또는 그 화합물과 <u>이를</u> 1% 이상
	함유한 혼합물. 다만, <u>셀레늄,</u>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
	오렌지[Cadmium sulfoselenide orange; 12656-57-4], <u>카드뮴</u>
	설포셀레나이드 레드[Cadmium sulfoselenide red;
	<u>58339-34-7]</u> 의 경우는 이를 25%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
97-1-213	오염화 인[Phosphorus pentachloride; 10026-13-8] 및 이를 <u>1%</u>
	이상 함유한 혼합물
98-1-480	트리부틸아민[Tributylamine; 102-82-9] 및 이를 <u>1%</u> 이상
	함유한 혼합물
2014-1-692	1-데실피리디늄 비스(플루오로술포닐)이미드[1-Decylpyridinium
	bis(fluorosulfonyl)imide; <u>1702310-11-9</u>] 및 이를 25% 이상
	함유한 혼합물
2023-1-1110	3,5-디플루오로페놀[3,5-Difluorophenol; 2713-34-0] 및 이를
	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
고유번호	화학물질의 명칭
2023-1-1111	테트라하이드로-3-메틸티오펜
	1,1-디옥사이드[Tetrahydro-3-methylthiophene 1,1-dioxide;
	872-93-5] 및 이를 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3-1-1112	1,1,1-트리플루오로-N-[(트리플루오로메틸)술포닐]메탄술폰아미드
	의 세슘염
	(1:1)[1,1,1-Trifluoro-N-[(trifluoromethyl)sulfonyl]methanesulfo
	namide, cesium salt (1:1); 91742-16-4] 및 이를 25% 이상
	함유한 혼합물
2023-1-1113	1,1,2-트리클로로에탄[1,1,2-Trichloroethane; 79-00-5] 및 이를
	25% 이상 함유한 혼합물
2023-1-1114	1,5-디이소시아나토펜탄 중합체,
	2-에틸-1-헥산올-블럭[1,5-Diisocyanatopentane homopolymer,
	2-ethyl-1-hexanol-blocked; 1976005-08-9] 및 이를 1% 이상
	함유한 혼합물
2023-1-1115	이소노닐 인산[Isononyl phosphate; 84988-61-4] 및 이를 5%
	이상 함유한 혼합물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,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(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: 2024년 1월 1일
- 2.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: 2024년 1월 1일
- 3.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: 2024년 1월 1일
- 4.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: 2025년 7월 1일
- 5.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: 2025년 7월 1일
- 6.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: 2024년 7월 1일
- 7.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: 2027년 7월 1일